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청사 질서유지,
보안·방호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71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1
III . 총괄 검토	4
1. 제정안의 입법 취지	4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5
3. 총괄 검토	8
IV . 조문별 검토	10
1. 목적(안 제1조)	10
2. 정의(안 제2조)	12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13
4. 청사의 수급 및 관리의 주체 등 (안 제4조, 제5조)	13

5.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 예산요구(안 제5조)	18
6 실태조사(안 제8조)	21
7. 청사 보안관리(안 제9조)	22
9. 청사 출입관리(안 제10조)	24
9. 질서유지(안 제11조)	25
10. 청사 보안관리(안 제12조)	29
11. 청사 시설관리와 시설 이용(안 제13조, 제14조)	30
12. 청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5조)	31
13. 상호 협력, 권한의 위임(안 제16조, 제17조)	32
14. 과태료(안 제18조)	34
15. 부칙	35
 [참고1] 정부청사 일반현황	 37
[참고2] 중앙행정기관 단독·임차청사 현황	38
[참고3] 지역별 임차청사 현황	39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출연월일 : 2024. 7. 12.
3. 회부연월일 : 2024.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한 청사 출입 제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안 제6조)

청사 수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안,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청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등 조사(안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사 출입관리(안 제10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출입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청사 질서유지(안 제11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방호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하여 제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방호인력의 배치 및 직무(안 제12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관리를 위하여 청원경찰 등의 방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방호인력은 청사출입자 등에 대한 출입 통제, 물품 반입 및 반출 통제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바. 청사 시설 이용 기준 및 원상복구 명령 등(안 제14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사 입주기관 또는 시설이용자가 청사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Ⅲ.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입법 취지

현행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¹⁾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로 정부청사의 관리를 포함하고 있음. 정부청사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은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함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정부청사의 관리 업무에 대한 근거 법령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

참고로,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본칙은 15개 조항²⁾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적용범위)는 총칙 성격을 가지고,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사 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의2(청사의 시설관리), 제8조의3(청사의 출입관리), 제9호의2(방호진단)은 청사의 질서유지, 시설·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1조(시행세칙)은 보칙의 성격을 가짐.

1)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제1조~제11조, 가지조문으로 제2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2가 있음.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청사 수요·취득, 청사 시설 관리 및 청사 내 질서 유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칙 18개의 조항과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 제1조는 제정안이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제정안 제2조는 제정안의 주요 개념인 중앙행정기관, 청사, 수급, 관리, 보안관리, 시설관리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4조는 청사 관리 등의 주체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사 수급, 청사수급관리계획, 예산요구 등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정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사 보안, 출입관리, 질서유지, 방호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설관리, 시설 이용 등, 청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제정안과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을 비교해 보면, 질서유지(안 제11조)와 방호인력(안 제12조)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안 제18조)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한편 제정안은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제6조³⁾의 청사 배정요청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3) 「정부청사관리규정」 제6조(청사의 배정요청) ① 기관의 신설, 기구의 확대 또는 정원의 증원등 청사의 추가수요를 가져올 직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

제정안과 「정부청사관리규정」 비교

조문	제정안	「정부청사관리규정」
목적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정의	(§2) 1.중앙행정기관 2.청사 3.수급 4. 관리 가. 보안관리 나. 시설관리	(§2) 청사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청사 수급 관리	(§4)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의 수급 관리를 총괄·조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의 수급을 결정(다만, 국방 등을 위한 청사는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수급 결정) ③ 합동청사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 ④ 제3항 외의 청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안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가능	(§3) ① 청사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총괄 ② 1. 합동청사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 2. 그 밖의 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배정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 ③ 임차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설관리 및 방호 등에 관한 지침 제정 가능
	(§5)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편의, 경제성, 행정능률,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의 수급을 결정	
	(§6) 청사수급관리계획 등	(§4) 청사수급관리계획
	(§7) 예산요구 등	(§5)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6) 청사의 배정요청
		(§7) 청사의 취득 및 처분
		(§8) 청사의 합동화
	(§8) 실태조사	(§9) 실태조사 등

안전부장관에게 직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때 청사의 추가배정을 동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에 따라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사의 배정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청사 안전 질서 유지	(§9)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안전 및 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보안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10)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출입관리 기준 운영 가능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출입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에 대해 청사 출입 제한 가능	(§8의3)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의 기준 제정 및 운영 가능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출입절차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출입 제한, 그 밖에 청사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능
	(§11) ① 청사출입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② 반입제한물품의 반입, 촬영제한 구역에서 촬영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청사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③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방호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단봉(短棒), 분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음.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18) 제11조제1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2)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방호인력을 둘 수 있음	
시설 이용 관리	(§14)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시설 이용 기준을 운영 가능	
	(§15) 청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8의2)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자적 시스템 을 구축·운영 가능

3. 총괄 검토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중 청사수급관리계획 등 청사의 수급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관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사의 출입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청사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을 통해 「정부청사관리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입법하는 경우 국민과 행정기관에 대한 규범력이 높아짐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정부청사의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에 따라 청사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청사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이는 국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유사 입법례로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1항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⁴⁾.

4) 「법원조직법」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참고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출입관리 및 청사 질서유지와 관련하여 내부 규정을 정하여 시행중임. 국회의 경우 국회규정인 「국회청사관리 규정」 제3조(청사출입의 통제 등), 제5조(금지행위), 제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이 시행중이고, 헌법재판소의 경우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3조(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대상), 제14조(출입의 제한) 등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

-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V. 조문별 검토

1. 목적(안 제1조)

제정안 제1조는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 제1조의 목적 규정을 통해 제정안에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고, 그 목적은 청사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 능력 향상이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제정안의 다른 규정을 해석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1조는 청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제정안 제1조에는 ‘청사 출입 관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① 현재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주된 이유는 청사 출입 관리 및 청사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 ② 제정안 제1조

와 같이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③ 제정안에서도 안 제9조(청사 보안), 제10조(출입 관리), 제11조(질서 유지)에서 그 세부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면서 안 제11조 위반시 안 제18조에서 과태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 제1조에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청사 출입 관리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 제1조는 제정안이 도모하는 목적으로 청사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능률 향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에 ‘국민편의와 시설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민편의와 관련하여 제정안 제5조(청사 수급)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 수급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 “국민편의”를 가장 앞 순서로 규정하고 있으며⁵⁾, 시설이용자 편의와 관련해서는 제정안 제13조(시설관리)⁶⁾에서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청사 입주기관이나 시설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청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과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제정안 제1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제정안 제5조(청사 수급)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편의, 경제성, 행정능률,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의 수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제정안 제13조(시설관리)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에 입주한 기관(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또는 청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청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의(안 제2조)

제정안 제2조는 제정안의 주요 개념인 “중앙행정기관”, “청사”, “수급”, “관리”에 관한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청사”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용 또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다만,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수급”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수요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하는 용도, 적정 규모, 취득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4. “관리”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보안관리: 청사 출입, 청사 내 질서유지, 제12조에 따른 방호인력(이하 “방호인력”이라 한다) 등에 대한 관리 나. 시설관리: 청사 시설의 유지 및 이용 등에 대한 관리

제정안 제2조에서는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제정안에서 규율하는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제정안 제3조는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안 제3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정안이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에 관한 일반법임을 명시하려는 취지로 보임.

4. 청사의 수급 및 관리의 주체 등(안 제4조, 제5조)

제정안 제4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청사의 수급을 결정하고 국유의 청사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사 보안관리 및 청사 시설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청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수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5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편의, 경제성, 행정능률,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의 수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조(청사 관리 등의 주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의 수급을 결정한다. 다만, 국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청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수급을 결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유(國有)의 청사를 관리한다. 1.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사용하는 청사 2. 향후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청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는 청사 ④ 제3항에 따른 청사 외의 청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안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청사 수급)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편의, 경제성, 행정능률,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의 수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4조를 통해 청사의 유형별로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안관리 및 시설관리에 대한 지침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청사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4조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1항7)을 상향하여 입법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청사의 관리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8)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4조제2항 단서는 국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청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사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수급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같이 국방 등의 목적을 위한 청사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청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사의 효과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4조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사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1항 및 [별표]에 규정된 국방 또는 군사시설, 형집행시설, 교육시설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임.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1항, [별표]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① 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총괄한다.

- 7)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① 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총괄한다.
- 8)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하 생략)

[별표] 청사의 수급 및 관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11조 관련)

1. 국방 또는 군사시설
2. 형 집행시설
3. 교육시설
4. 의료시설
5. 재외공관용 청사
6. 시험·연구시설
7. 관람집회 또는 전시시설
8. 그 밖에 시설 사용의 주목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이 아닌 시설

제정안 제4조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사용하는 청사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9)의 내용을 상향하여 입법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4조제4항은 제3항에서 따른 청사 외의 청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10)을 상향하여 입법하면서,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3항과 달리 임차청사에 대해서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이는 임차청사에 대

9)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②국유의 청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합동청사, 청사의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청사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10)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②국유의 청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2. 제1호 외의 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배정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③ 임차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얻은 임차청사, 지방행정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임차청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해서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정부중앙청사와 지방합동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¹¹⁾이 관리하고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하는 청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업진흥청, 대검찰청, 경찰청, 질병관리청 등 단독청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음.

[청사 유형별 관리 기관]

1.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 위임)

- 정부(합동)청사 / 세종, 서울, 과천, 대전 등 중앙청사 및 대구, 인천, 광주, 경남, 제주 등 지방합동청사

2. 해당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 별표에 규정한 국방 또는 군사시설, 형집행시설, 교육시설 등의 특수시설
- 단독청사(식품의약품안전처, 농업진흥청, 대검찰청, 경찰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등)
- 임차청사(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새만금개발청 등)

※ 자료 : 행정안전부

다음으로 제정안 제4조제5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안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침에서 보안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청사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1) 참고로,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5.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 예산요구(안 제6조, 제7조)

제정안 제6조와 제7조는 청사 수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고려하여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가재정법」 제31조¹²⁾에 따른 예산요구서 제출 시 통보받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6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청사 수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청사수급관리계획안 2.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사 수요 3. 청사의 합동화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및 정원 증감 등 청사 수요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예산요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청사의 수급에 관한 예산이 포함된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 수급에 관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6조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제4조¹³⁾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청사수급관리계획안,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사 수요, 청사의 합동화 및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청사 수요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바, 이

12)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3) 「정부청사관리규정」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① 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및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청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보임.

제정안 제7조제1항은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제5조제2항14)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에서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제7조15)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사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청사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16)에 따른 국유재산에 해당하고, 국유재산의 취득은 「민법」 및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청사 배정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정부청사관리규정」 제6조를 청사의 수급 절차에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
- 14) 「정부청사관리규정」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청사를 취득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7조(청사의 취득 및 처분) ① 청사의 취득은 신축·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청사를 처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6)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행정 환경 및 행정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관의 신설, 정원의 증원 등 청사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두면 청사관리에 관한 부처간 협업 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이므로 제정안에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제6조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실태조사(안 제8조)

제정안 제8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8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8조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제9조¹⁷⁾에서 규정하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8조를 통해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청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효과적인 청사관리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청사 보안관리(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청사 보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청사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청사의 안전 및 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한 청사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며, 서울, 과천, 세종, 대전 4개 청사는 「통합방위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최상위 등급인 가급에 해당함.¹⁸⁾ 이 같은

- 17) 「정부청사관리규정」 제9조(실태조사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 또는 주거시설 관리실태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청사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청사의 관리상태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사의 관리·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18)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침입 등을 방지하고 청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사 출입 및 보안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 같은 조치들은 국민에 대하여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음. 이를 고려하여 제정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청사의 보안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임.

제정안 제9조는 청사관리의 장이 청사의 안전 및 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청사와 청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 제13조¹⁹⁾와 같이 보안관리의 목적에 청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보안업무규정」 제32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항공기·선박 등 중요 장비를 각각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전력시설 및 항공기 등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 또는 장비가 지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시설 또는 장비를 제1항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기준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19) **제정안 제13조(시설관리)**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에 입주한 기관(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또는 청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청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청사 출입관리(안 제10조)

제정안 제10조는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출입 절차, 물품 반입·반출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0조(출입관리)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절차, 물품 반입·반출 등 청사 출입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출입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출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정안 제10조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²⁰⁾에서 규정한 청사의 출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입법하려는 것임. 청사의 출입제한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청사의 출입관리)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청사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청사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 질서유지(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질서유지) ①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이하 “청사출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 물품,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행위
3. 청사관리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반입제한물품”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청사를 출입하는 행위

가. 폭발성·자연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나. 독극물, 총포·도검류, 흉기

다. 그 밖에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위험 또는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4. 청사를 점거하거나 청사 내에서 농성하는 행위

5.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청사 시설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촬영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

6. 그 밖에 청사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반입제한물품을 반입하거나 촬영제한구역에서 촬영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청사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방호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단봉(短棒), 분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방호인력은 제3항에 따라 유형력의 행사 등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안 제11조제1항은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주는 행위 또는 청사관리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폭발성 물질을 소지하고 청사를 출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제정안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 청사의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은 법원청사내에 있는 사람이 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②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보안관리대원이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²¹⁾.

21) 「법원조직법」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정안과 법원조직법상의 금지행위 비교 >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	제정안에 따른 금지행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 물품,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에 불응 하는 행위
	청사관리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폭발성·자연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 독극물, 총포·도검 류, 흉기, 그 밖에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위험 또는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청사를 출입하는 행위
	청사를 점거하거나 청사 내에서 농성 하는 행위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청사 시설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 촬영제한구역 ”이라 한다)에서 허가 없이 촬영 을 하는 행위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그 밖에 청사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정안 제11조제3항은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문·검색 등에 불응하는 행위(제정안 제11조제1항제2호), 청사 내 농성행위(제정안 제11조제1항제4호) 등을 제지하기 위하여 방호인력으로 하여금 단봉(短棒), 분사기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정도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경비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²²⁾은 경비원이 근무 중에 휴대할 수 있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등은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것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음.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서는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제1호),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제2호),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제3호),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방호인력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체적 유형력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방호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 「경비업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①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원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장비	장비기준
1. 경적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
2. 단봉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mm 이하의 호신용 봉
3. 분사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
(이하 생략)	(이하 생략)

10. 청사 보안관리(안 제12조)

제정안 제12조는 청사출입자에 대한 검문·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인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2조(방호인력)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호인력을 둘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 2.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3.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 4.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고용하여 청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② 방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청사출입자 및 청사 출입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및 출입 통제 2. 물품 반입 및 반출 통제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제지 4. 그 밖에 청사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정안 제12조를 통해 방호인력의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1. 청사 시설관리와 시설 이용(안 제13조, 제14조)

제 정 안
제13조(시설관리)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에 입주한 기관(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또는 청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청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 이용 등)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입주기관 또는 시설이용자가 청사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정안 제13조는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청사에 입주한 기관이나 청사 시설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청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14조는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청사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기관이나 시설이용자가 청사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13조(시설관리) 및 제14조(시설이용 등)는 입주기관·시설이용자의 청사 이용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되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유재산인 정부 청사를 보호·관리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12. 청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5조)

제 정 안
제15조(청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정안 제15조는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전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청사 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에는 회의실 등을 관리하는 정부청사관리시스템(2018년 구축, 소요예산 5.35억원), 일반출입증 등을 관리하는 출입관리시스템(2018년 구축, 소요예산 3.83억원), 에너지·자재 등을 관리하는 정부청사시설관리시스템(2019년 구축, 소요예산 5.58억원)이 있음.

[청사 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 현황]

구분	기능	구축시기	소요예산
정부청사관리시스템	회의실, 통근버스, 구내방송 등 관리	2018년	5.35억원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	일반출입증, 차량출입증, 주차 등 관리	2018년	3.83억원
정부청사시설관리시스템	에너지, 자재, 장비 등 관리	2019년	5.58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13. 상호 협력, 권한의 위임(안 제16조, 제17조)

제 정 안
제16조(상호 협력)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의 장과 사무공간의 배정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정안 제1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효율적 청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의 장과 사무공간의 배정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16조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청사 배정 및 그 밖의 협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 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²³⁾의 상황을 감안할 때 법률과 실제 행정환경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청사관리규정」 제9조의²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에 대하

23) 선거관리위원회(인천·경북·충남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천청사) 등 9개 기관

24) 「정부청사관리규정」 제9조의2(방호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에 대하여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6조(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① 영 제9조의2에 따른 방호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 연 2회 이상.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여 방호진단을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사 울타리, 출입구 등 시설의 적정성, 청사 출입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 운영의 적정성, 차량 출입에 관한 사항, 열쇠 등 잠금장치 관리·운영의 적정성 등 청사 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방호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제정안은 방호진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음. 청사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한 등 제정안의 목적과 청사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방호진단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방호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연 1회 이상.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제1호 외의 합동청사

나. 중앙행정기관이 이용하는 청사(제1호에 규정된 청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청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울타리, 출입구 등 시설의 적정성
2. 청사 출입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 운영의 적정성
3. 차량 출입에 관한 사항
4. 열쇠 등 잠금장치 관리·운영의 적정성
5. 그 밖에 청사 방호에 필요한 사항

14. 과태료(안 제18조)

제 정 안
제18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사관리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정안 제18조제1항은 안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 물품,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행위, ③ 폭발성·자연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독극물, 총포·도검류, 흉기 등을 소지하고 청사를 출입하는 행위, ④ 청사를 점거하거나 청사 내에서 농성하는 행위, ⑤ 촬영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 등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는 「형법」 제257조에 따른 상해에 해당할 수 있고 과태료는 경미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²⁵⁾을 대상으로 한다

25) 김동희, 「행정법」 제21판 527면, 박영사, 2015

대법원은 1969. 7. 29. 선고한 69마40 결정에서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은 다 같이 행정법령에 위반하는 데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는 같다 하더라도 행정형벌은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인 데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데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참고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가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법원조직법」은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26)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벌칙 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에는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15. 부칙

제정안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6) 「법원조직법」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한 것은 안 제2조제1호, 안 제4조제2항, 안 제6조제5항, 안 제11조제1항제6호, 안 제11조제3항, 안 제12조제1항제1호, 안 제12조제2항제4호,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12조와 관련해서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방호인력이 있고, 제정안 제15조와 관련해서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청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38

참고1

정부청사 일반현황

청사	소재지	주요 입주기관
정부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서울청사(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서울청사(별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교부 등
정부서울청사(창성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과천청사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정부대전청사	대전광역시 서구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등
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지방보훈청 등
인천지방합동청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보훈지청 등
광주지방합동청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조달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보훈청 등
경남지방합동청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세관, 국립마산검역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농림축산검역본부제주지역본부, 제주세무서, 제주지방병무청, 제주보호관찰소 등
춘천지방합동청사	강원도 춘천시	강원서부보훈지청, 춘천보호관찰소, 강원지방통계지청 등
고양지방합동청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경인지방통계청고양사무소 등
충남지방합동청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충청지방통계청홍성사무소 등
경북지방합동청사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경북북부보훈지청,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

※ 자료 : 행정안전부

참고2

중앙행정기관 단독·임차청사 현황

청사	기 관 명	위 치
단독청사	국방부	서울 용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검찰청	서울 서초구
	경찰청	서울 서대문구
	농촌진흥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질병관리청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해경청	인천 연수구
임차청사	재외동포청	인천 연수구
	새만금개발청	전북 군산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서울 중구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 자료 : 행정안전부, 2023. 12. 31. 기준

참고3

지역별 임차청사 현황

위치	기관명	부 서 명
서울·경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민정실, 공직복무 현장팀
		조세심판원 서울민원실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
		혁신성장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외교부	본부 대사실
		여권과·영사서비스과
		영사콜센터
		한태평양도서국정상회의준비기획단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정세분석국 북한자료센터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저작권서울사무소)
		해외문화홍보원 (외신분석팀)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
		해외문화홍보원(파우치실)
		해외문화홍보원 해외홍보콘텐츠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교류홍보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사법경찰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서울사무소)
		건축혁신기획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방송통신사무소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국립인천공항검역소(김포지소)
		국립평택검역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제도운영과)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환경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환경감시단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나라샘도서관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
		경인지방통계청 남양주사무소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인수입식품검사소
		의왕수입식품검사소
		김포수입식품검사소
		평택수입식품검사소
		광주수입식품검사소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세종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키획단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 과거사업무지원단,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보건복지부	본부(인구정책실, 연금정책국 등)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환경부	본부(환경조사담당관실, 도시침수기획단)
		국가물관리위원회지원단
		본부(자원순환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e-Nav 중앙운영센터
대전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북대전세무서
	방위사업청	본부(일부)
	특허청	특허심판원(상표디자인심판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질병관리청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방송통신위원회	대전관할팀
	법무부	글로벌인재비자센터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
	통계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충청지방통계청
청주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청주공항 검역사무소
천안	농림축산식품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안수입식품검사소
	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중기청
광주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기청
	환경부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영선강유역환경청
대구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식약청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약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사무소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익산	국세청	익산세무서
	관세청	전주세관 익산지원센터
원주	국토교통부	원주공항출장소
		원주국토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주사무소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원주사무소

※ 자료 : 행정안전부, 2023. 12. 31. 기준